|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용역 계약서**  메가로이드(이하 “구매자”라 함)와 강대한(이하 "공급자”라 함)는 아래와 같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사항은 "**개발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 | | | | | | | | |
| 계약번호 | (제2019 - 025호) | | | | | | | | | |
| 계 약 명 | KSNET 쇼핑몰(KSMall) 퍼블리싱 | | | | | | | | | |
| 총 공급가액 | | | | \3,500,000 | | 부가가치세 | | |  | |
| 계약 기간 | 계 약 기 간 | | | | 2019년 7월 1일 부터 2019년 8월 9일 까지 | | | | | |
| 개발용역납품기한 | | | | 2019년 8월 9일 | | 최종검수기한 | | | 2019년 9월 30일 |
| 지체보상비율 | | | 0 |
| 납 품 장 소 | | | | "구매자" 지정 장소 | | 인 도 조 건 | | | 설치 및 가동 |
| 대금  지급  조건 | 개발용역 | | 계약금 | | 개발용역 계약금액의 42%(\1,500,000원) | | | | | |
| 중도금 | |
| 잔 금 | | 개발용역 계약금액의 58%(\2,000,000원) | | | | | |
| 합 계 | | 계약금액의 100%(\3,500,000원)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상기 기한 내 용역완료이며 실 구동관련(8월 9일 이후) 요청사항 시 업무지원 | | | | | | | | |
|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개발용역 계약 일반조건  별첨  2019년 07월 01일 | | | | | | | | | | |
| **‘구매자’**  상 호 : 메가로이드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판교테크노벨리 1동 4층)  대표이사 : 이 무 호 (인) | | | | | | **‘공급자’**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이사 : (인) | | | | |

**개발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구매자"와 "공급자"는 **개발용역 계약서**(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및 제3조의 계약 문서에서 정한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제2조 (상생의 원칙)**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제3조 (계약문서)**

1. 계약 문서는 개발용역 계약서, 개발용역 계약 일반조건, KSMall 리뉴얼 용역 RFP, 사업 수행 계획서 등으로 구성한다.
2. 계약문서간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일자가 최근인 것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프로젝트”란 "구매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와 행위를 의미하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할 용역의 수행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수행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개발용역"이란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급자"의 경험 및 전문성에 입각한 총체적인 해결 방법 제시 및 수단 제공을 포함한다.
3. "제 3자"란 "구매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타사를 칭한다. 단,"구매자"와 "공급자"의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및 자회사는 제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치"란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된 후 이행용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영"이란 기 설치된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제5조 (적용범위)**

본 계약의 제 조건은 "공급자"의 제공 용역 및 산출물뿐만 아니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별도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구매 계약서 및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6조 (대금지급)**

1. "공급자"는 제19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된 후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본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2. "공급자"는 아래 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구매자"에게 대금청구를 하며 "구매자"는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한다.
3. 계약금 지급 시기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4. 중도금 지급시기는 설계완료 및 중간보고 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5. 잔금지급 시기는 프로젝트완료 후 최종 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6. 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금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제7조 (계약이행보증금)**

해당 무

**제8조 (보증금의 처리)**

해당 무

**제9조 (개발용역 업무 명세서)**

1. "공급자"가 수행할 개발용역의 업무범위는 별첨 ‘KSMall 리뉴얼 용역 RFP’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르며,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술한 업무 외 경미한 변경이나 용역수행상 필요한 경미한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2.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개발용역의 특성에 따른 품질관리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명기하고 "공급자"는 검수 시 해당 품질 요건이 충분히 이행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가용역)**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부가용역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가용역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부가용역에 대한 부가 용역비는 상호협의 하에 지급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 호에 따른 "공급자"의 서비스는 부가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범위 내로 본다.

가. 본 개발업무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요원에 대한 "공급자"의 교육

나. 본 개발업무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요한 "공급자"의 참고자료 및 기술의 적기

공급

다. 본 개발업무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라. 본 용역 완료 시점부터 “KSMall 리뉴얼 용역 RFP”상에 명시된 서비스 Open일

까지의 기술 지원

마. 무상보증기간내 “구매자”의 신제품 출시 시 이미지 작업 등 Web 사이트상

신제품 등록 관련 제반 사항 지원

**제11조 (개발용역 일정)**

개발용역 일정은 사업 수행계획서 상에 계약이행의 상세 단계별 작업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기(산출물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그 명기된 작업일정에 따라 개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매자"의 역할 및 책임)**

1. "구매자"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1. "공급자"의 프로젝트 팀과 "구매자"의 구성원 사이의 창구역할
   2.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 및 관리를 비롯한 프로젝트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총괄
   3. 프로젝트 전체의 관리 및 기획, 관리에 대한 지시 및 지침의 제공
   4. 프로젝트 단위 팀을 위한 Resource 제공 및 프로젝트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조치
   5. "공급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와 함께 프로젝트 변경 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한 이슈의 해결지원
   6. 제13조 ③항에 의거 "공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확인
2. "구매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제공, 요구사항의 명확한 제시 및 기타 "공급자"의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감독청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

1.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이행은 사업 수행계획서에 의거해서 "공급자"가 책임진다.
2. "공급자"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1. "구매자"의 프로젝트 팀과 "공급자"의 구성원 사이의 창구역할
   2. 프로젝트 팀 관리계획서의 작성, 보수 유지 및 진척상황 보고
   3. 프로젝트 참여인력 및 자원확보를 비롯한 프로젝트 팀의 조직 및 인원관리
   4. "구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와의 업무협의, 프로젝트의 공정 및 일정관리
   5. "구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와 함께 프로젝트 변경 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한 이슈의 해결 지원
   6. "공급자"의 해당 기간의 일자 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과 수행업무를 명시한 타임 리포트 작성
3. "공급자"는 프로젝트 단계별 작업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4. "공급자"는 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라 개발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제12조 ②항에 의하여 "구매자"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등을 프로젝트 완료 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동 자료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외부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나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요 부분은 "구매자"의 프로젝트 수행인력과 함께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공급자"가 프로젝트 수행업무의 하도급을 주려면 "구매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체 인력에 대하여 "구매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교체 인력에 대한 "공급자"의 관리 책임이나 계약이행의 기한 내 완료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공급자"는 프로젝트를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내용을 상호 인지할 수 있도록 단위 개발팀에 개발 인력을 공동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프로젝트의 진행은 "공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공급자"는 "구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제14조 (지체보상금)**

1. "공급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납품완료일 또는 최종 검수일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지체보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체보상금)을 "구매자"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 지체보상으로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등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및 "구매자"의 사정으로 최종 납기일이나 최종 검수일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구매자"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1. "공급자"는 자신을 비롯한 "공급자"의 고용인, 수급인 등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구매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공급자"의 하자보수 책임의 이행이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지는 아니한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이나 하자보수기간 중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고용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본 계약 이행의 실패 또는 구축한 서비스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인수기준에 미달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구매자"가 손해배상청구, 기타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송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만이 손해배상청구 기타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송을 수행하되, 소송 결과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공급자"의 귀책이 인정된 경우, "공급자"는 자신("공급자"의 고용인, 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방어비용 포함)를 배상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급자"의 담당직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 또는 사용계약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6조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1. "공급자"는 "구매자"의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이를 해결해야 하고 "구매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본 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라 함은 불법복제 등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17조 (서비스의 수행장소 등)**

1. 용역개발의 수행장소 및 소요전산기기, 사무기기, 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구매자"는 대상업무의 보안유지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공급자"에게 "구매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개발용역 업무를 수행,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PC 등 업무용 전산기기(이하 PC라 한다)는 상호 협의하여 "구매자"가 제공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제공된 PC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며 "공급자"의 투입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된 PC에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PC를 "구매자"에게 반납시 최초 "구매자"가 제공된 상태로 원상회복 후 반납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및 S/W에 대해 삭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제공한 PC를 "공급자"의 투입인력이 사용함에 따른 불법S/W 분쟁 등 각종 분쟁 발생(법적 소송 등)시는 “공급자"가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구매자"의 장소를 개발장소로 사용하는 "공급자"의 직원은 "구매자"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안기준, 정책 등 모든 기준과 방침을 준수한다.

**제18조 (진행의 관리)**

1. 프로젝트의 진행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다만,"공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더라도 "구매자"는 "공급자"의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 성실한 프로젝트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대체인력을 기존의 비용 범위 내에서 즉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공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첨 "사업 수행계획서"에 의거 개발의 각 단계마다 "구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검수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업무를 진행한다.

**제19조 (검수)**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검수요청 하기 전에 "구매자"의 품질보증방법에 의하여 품질보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을 검수 요청 시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수 요청 시 업무운용에 필요한 한글화 된 사용자 매뉴얼 및 업무설계서와 요구된 문서화 자료, 프로그램 Source Code등 제반 산출물을 "구매자"의 프로젝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매자"는 "공급자"의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검수확인서)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는 "공급자"가 검수 요청한 결과물이 합격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 "공급자"에게 불합격사유와 검수보류 사실을 통지하고, 검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검수보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사유를 시정하여 "구매자"에게 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공급자"의 재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검수 확인서)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구매자"가 검수 과정에서 본건 시스템 또는 결과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구매자"에게 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6. 최종 검수 완료 일은 본 계약서의 요건 및 관련 계약 부속서류에 명기된 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구매자"가 승인한 날(검수 확인서의 기준일자)로 한다.

**제20조 (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

1. "공급자"가 무상으로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무상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로부터 “1년” 까지로 하며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공한 시스템 품질이 계약문서와 상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동 기간 중 "공급자"는 "구매자"가 항상 최적의 상태(제품의 기능 및 성능 향상 포함)에서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유지보수 정비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능 및 성능 향상에 포함되는 기능추가 및 업그레이드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무상보증기간 종료일이 월 중인 경우 동 월의 말일까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2. "공급자"가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구축 제공된 시스템에 대하여 스스로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구매자"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야 한다.
3. 본조 제②항에 따라 보수 되거나 교체된 시스템에 대하여 "공급자"는 본 조 제①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다시 부담한다.
4. "구매자"가 무상 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자”는 무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5. 무상 보증기간 중에도 "구매자"는 업무요건 및 설계변경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구매자"의 요구가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합의된 초과부분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공급자"는 무상 보증기간 중 "구매자"로부터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 2시간 이내 도착 및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7. 본 조 ⑥항의 내용이 불이행 되었을 경우에 "공급자"는 그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소유권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

1. 대금 지급 완료와 동시에 "공급자"가 공급한 시스템 및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디자인 이미지 소유권 및 변경 권리 포함)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본 계약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 사용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본 계약 이전부터 존재하는 소유권, 저작권의 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 대상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 하는 경우 소유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양자간 또는 삼자간 소프트웨어 임치 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3.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사용권만을 부여한 경우에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Source Code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Source Code에 대해 오류 수정 및 기능 향상, 업무확장, 변경환경 적용 등 "구매자"의 자체 대응 필요시에는 변경 적용을 보장한다. 다만, Source Code 제공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Source Code를 임치할 수 있으며, 임치 등록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에 의해 임치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계속적으로 Source Code가 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무상기간 종료 후 "공급자"의 유상 유지보수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구매자"는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지적산출물을 영업을 통해 판매할 권리(이하 '영업권'이라 칭함)를 갖는다.
5. "공급자"는 본 계약에 기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및 지적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며 만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민원이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만약 제 3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지보수계약의 체결)**

해당 무

**제23조 (유지보수 요율 및 범위)**

해당 무

**제24조 (목적물 사용권 범위)**

사이트 라이센스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KSNET 쇼핑몰(KSMall) 서비스 사용권을

제공한다.

**제25조 (교육 및 지원)**

1.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구축, 설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인력,기술,교육 등을 적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교육을 적기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의무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스템의 주요 부분 구축을 공급자 이외의 제 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단,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계약의 변경)**

1.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대상 및 범위를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는 이를 검토한다.
3. 제①항에 의한 계약의 변경 시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변경 계약 조건이 당초 계약 내용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의 개발용역계약의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28조 ①항 “나”호를 적용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서면통지로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공급자"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급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함이 곤란하다고 "구매자"가 판단할 때
4. "공급자"가 회생, 파산, 워크아웃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영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5. “공급자”는 “구매자”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통지로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구매자”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다.
7. 본조 제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에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기 지불한 대금의 전액을 “구매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가 해제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기 지불한 대금 중 해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구매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본 계약이 전부 해지 또는 일부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선급금은 이를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본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본 계약에 해제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 제1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수검)**

"공급자"는 "구매자"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수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비밀유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제②항 및 제③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공급자"의 비밀사항을 "구매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계열회사에게 "공급자"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때 "구매자"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로써 "공급자"의 비밀을 엄수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구매자"는 관련 법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행정 처분 기타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4. "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원으로부터 기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①항과 동일한 기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하며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6.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는 용역업무수행 중 취득한 "구매자"의 고객의 금융 정보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관련법령, 신용정보관련법령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매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1조 (보안사항)**

"공급자"는 "구매자"의 정보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아 "공급자"의 파견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의 업무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인력은 공급자의 파견직원으로 본다.

**제32조 (통지의무)**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구두, 팩스 또는 서면으로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리 및 의무의 양도 등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등 이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 분쟁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다툼에 대한 소송 관할 법원은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일반사항)**

1. 본 건 개발에 필수적으로 연관된 "구매자"의 타 시스템의 중대한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제반 조건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되, 양 당사자가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자료, 각종 서면 중에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이전에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일체의 구두 합의,협의된 내용에 우선한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필요할 때에는 협약서를 작성한다.
5. 본 계약의 해석은 일반 상 관례 및 대한민국 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35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효력은 본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하여백>